

을 위하여 산파역할을 擔當하여야 할 中央政府의 미온적인 態도와 地方自治 關聯法規의 制約 등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이 너무 限定되어 있어 실질적인 住民에 의한 住民自治制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地方自治의 發展을 阻害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該간 議政活動을 통하여 발견한 地方自治法中 不合理한 條項에 대하여 그 改正을 中央政府, 國會, 政黨 등에 建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主要內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地方議會의 監查範圍에 國家委任事務와 經費負擔事務를 포함하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內務部長官의 監查制를 廢止하며,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절차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여 地方行政의 監視 牽制機能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人事上的 公正성 확보 및 人力管理의 효율화를 위해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을 條例로 정하도록 하고, 地方議會의 議決의 효력은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地方自治制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事項입니다.

同 建議案은 本議員 外 10인이 提案한 案을 第10回 定期會 第5次 運營委員會에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答辯, 討論 등을 거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査한 結果, 金炯奎 議員 外 1인이 口頭動議로 提案, 建議한 地方自治法의 第36條第5項 條文中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削除하는 內容의 修正案을 出席議員 全員の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오늘 審査報告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關係機關에 建議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瑛會 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審査修正한 地方自治法改正建議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建 議 文 案

지난 해 7月 自治와 自律의 旗幟를 들고 全國民의 關心과 期待속에 地方議會가 出帆한 以來 우리 서울特別市議會는 그 간의 多様な 市民의 意見收斂을 통하여 住民의 權益과 福利增進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여 왔지만, 지난 1年 6個月間의 地方議會運營은 여러 가지 法的·制度的으로 不備한 與件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地方自治制는 中央에 集中되어 있는 權限을 民主的 方法으로 配分하여 地方政府의 自主성을 높이고 地方議會 運營의 效率성과 地方議會 議員의 圓滑한 議政活動을 保障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現行的 制度는 地方自治制의 早期定着을 위하여 產婆役割을 擔當하여야 할 中央政府의 微溫的인 態도와 關聯法規의 制約 등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이 너무 限定되어 있어 實質的인 住民에 의한 住民自治制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地方自治의 發展을 阻害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議會는 그간의 議政活動을 통하여 發見한 地方自治法中 不合理한 條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改正을 建議한다.

그 主要 內容은 地方議會의 監查範圍에 國家委任事務와 經費負擔事務를 包含하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內務部長官의 監查制를 廢止하며,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節次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하여 地方行政의 監視, 牽制機能의 效率성을 圖謀하도록 하며, 人事上的 公正性 確保 및 人力管理의 效率화를 위해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을 條例로 定하도록 하고, 地方議會의 議決의 效力은 大法院

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으로써 自治制의 實現을 위하여 꼭 必要한 事項이다.

住民에 의하여 選出된 우리 地方議員들은 名譽職으로 대부분이 生業에 從事하고 있는 關係로 住民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住民의 代辯者와 奉仕者로서의 機能 遂行을 滿足스럽게 못하고 있는 形편이다.

向後 地方議會 議員들이 公僕으로서의 諸機能과 役割을 遂行할 수 있게끔 法的·制度的 뒷받침이 早速히 마련되어야 하겠고, 自治權을 제약하는 既存制度의 補完은 물론 現行 法令上의 諸般制度를 再檢討하여 果敢히 改善 함으로써, 劃一的인 中央統制의 觀念을 脫皮할 수 있고 住民自治를 통한 民主化의 促進을 圖謀하여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議會 民主主義도 確立되리라 보고 본다.

現在 論議中인 地方自治法 改正時 우리의 이러한 建議事項이 꼭 反映되기를 바라며 關係機關의 폭넓은 理解와 持續的인 協助를 當付한다.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地方自治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의 2(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 議員이 會期중 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施行을 包含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6條中 第3項을 第5項으로 하고, 第3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라 함은 地

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와 地方自治團體가 經費를 負擔하는 事務를 包含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任받아 處理하는 國家事務 및 市·道의 事務에 대하여 國會 및 市·道議會는 그 監査를 각각 當該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6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6條의 2(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 등) 地方議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事務의 監査나 調査와 關聯하여 행하는 報告와 書類提出의 要求, 證言·鑑定 등에 關한 節次는 第20條의 規定의 範圍內에서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7條中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議長 또는 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第103條中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地方自治團體에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서 負擔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第118條中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開始 50日前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58條를 削除한다.

第159條中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事項이 法令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市·道知事는 內務部長官의 市長·郡守 및 自治區

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再議決된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3.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生活環境委員會委員長 白昌鉉 提案)

(15時 55分)

○議長 金璫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權赫柱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生活環境委員會 所屬 權赫柱議員입니다. 오늘 本議員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提案한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本 決議案을 提案한 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言論報道에 의하면 우무과이하운드협상이 農産物 그 中에서도 쌀輸入開放問題만 除外하고는 거의 妥結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쌀輸入開放도 不可避하다는 內容이 전해지고 있어 잘못된 農業政策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農民들이 茫然自失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더욱이 잘못된 農業政策을 推進해 온 일부 官吏와 商工人들이 主軸이 되어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쌀輸入開放은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大勢論을 펼치고 있어 자신들의 代價없는 희생을 담보로 한 都市人들의 利益追求 실패에 많은 農民들이 극도의 驚愕과 분노를 表出하고 있습니다.

農村은 우리 都市人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뿌리이며 쌀은 모든 都市人의 主食이고 農村地域經濟를 지탱하는 초석으로 쌀輸入開放이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진다면 우리 農村이

荒廢化되고 쌀을 무기로 한 食糧安保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쌀輸入開放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市는 다른 都市에 비하여 날로 비대화되어 가는 외형과 극심해지는 環境公害問題로 상당한 悶살을 앓고 있고 그나마 우리 市 自然環境 保全을 지탱해 주는 農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리 市의 심각한 公害問題解決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쌀輸入開放으로 인한 問題點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大多數 國民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쌀輸入開放은 절대로 許容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表明하면서 쌀輸入開放反對運動을 펼치고 우리 農産物을 愛用하고 있어 失意에 빠진 農民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 주는 契機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地方議會에서 이러한 住民들의 참 뜻을 理解하여 쌀輸入開放을 反對하는 決議를 公式的으로 表明하고 있어 全國 地方議會의 代表格인 우리 서울特別市議會도 쌀輸入開放을 反對하는 決議를 公式的으로 表明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하여 긴급히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을 提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特別市議會가 쌀輸入開放을 反對하는 決議를 公式的으로 表明하면 都市人들, 그 中에서도 商工人이 많은 서울市民들을 聲討하고 있는 農民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서울市民들이 農村의 어려운 실상을 새롭게 再認識하여 農村살리기 市民運動을 展開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提案한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을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各別한 理解로 우리 서울市議會에서 滿場一致로 採擇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採擇한 決議文을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決議文

첫째, 쌀은 食糧安保次元에서 國民의 安定的 食糧供給, 國土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保全, 農家所得의 維持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